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학교 연구역량 강화 등 〉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02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대학교 연구인력 배치(안 제5조제4항 신설)	3
2. 대학교의 연구 기능 강화 및 외부 연구협력 확대 체계 구축 (안 제17조·제18조·제19조 신설)	7
3. 창업지원 촉진(안 제20조 신설)	11
4. 국제교류 촉진(안 제21조 신설)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현 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5. 4. 10.

다. 회 부 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이자,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을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임.

국가유산 체계 마련,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등 커다란 제도의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유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전통문화 연구과정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에 맞춰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 인력 확보는 물론 세계 우수 대학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연구원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특정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함은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 국가유산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생산성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라.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19조).

Ⅲ. 검토의견

1. 대학교 연구인력 배치(안 제5조제4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유산 보존 등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연구원(員)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교직원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④·⑤ (생략)	제5조(교직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조는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비롯한 교원·직원·조교 및 겸임교원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임용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교원·조교·겸임교원 등의 임명은 총장이 하되, 직원의 임명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

○ 그런데 현행법은 교원·조교 등 교육 중심 인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디지털 전환 등 실무 중심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연구인력(연구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여 정책 연계형 연구나 유관기관과의 공동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기능 강화와 실질적인 연구기반 조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대학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⑤ 교원·직원·조교·겸임교원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에 연구원(員)을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 보존·복원 기술 고도화 등 최근의 정책적 흐름과 전문 인재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실무 기반의 연구인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통문화대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수용 곤란 의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기획재정부는 특정기관 내 인력 의무고용 규정은 인력·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유사한 요구가 타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등 일부 연구중심 인력 양성기관에 한해 법령상 연구원 의무 고용 규정이 존재하고, 연구원 배치는 필요시 교내 학칙 등 하위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임.
- 이 같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중심 인력양성기관의 경우 연구원 의무고용 규정을 두고 있고, 전통문화대학교는 다른 일반 대학과 달리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연구인재를 양성한다는 면에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봄.

[유사 입법례 현황]

법률명	조 문
「한국과학기술원법」	•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울산과학기술원법」	• 제8조(교원 및 연구원) ①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研究員)을 둔다.
「광주과학기술원법」	•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①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②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研究員)을 둔다.

○ 한편, ‘연구원’이라는 용어는 개정 조문 내에서 인력(직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해당 인력의 임명, 정원,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현행법에서 교원 등의 자격기준·임명·정원 등에 관한 사항(제5조제5항), 연구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5조제2항)³⁾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원의 임명, 정원,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전부수용 의견임.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5조(부속시설 등) ①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학교의 연구 기능 강화 및 외부 연구협력 확대 체계 구축 (안 제17조·제18조·제19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 제17조부터 제19조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으로, 국가유산청과 특정과제 공동연구 추진(제17조),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구시설·기기 공동이용 체계 마련(제18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및 인력 겸직 운용 근거 마련(제19조)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8조·제19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국가유산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

<신 설>	<u>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u> <u>제19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 최근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분야의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디지털 기반의 융합연구 및 실무 연계형 연구성과 창출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연구개발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국가유산청 등 유관 행정기관과의 공동연구, 외부 연구기관과의 자원 공유, 국내외 연구인력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가유산청 및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일련의 조문으로서, 교육 중심의 체계에서 연구·개발 중심의 체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안 제17조는 국가유산청장이 특정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과 대학 간 연구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항임⁴⁾.

- 안 제18조는 연구시설 및 기기의 공동이용을 제도화하여 물적 자원의 개방과 활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규정임.

- 안 제19조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외부 인력의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연구 인적자원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법」, 「대구 경북과학기술원법」 등에서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및 “연구

4) 국가유산청은 ‘특정과제’는 국가유산의 보존, 복원, 활용 또는 전통문화 전승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빙, 전통건축 복원기술 개발 등)를 의미하고, ‘필요한 조치’는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인력 증원 요구등 국가유산청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의미하며, 법령상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시설 등의 공동이용”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와 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유사 입법례 현황]

법률명	조 문
「한국과학기술원법」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법률명	조 문
「울산과학기술원법」	●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약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전부수용 의견임.

3. 창업지원 촉진(안 제20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원·직원·학생이 창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창업지원) 총장은 국가유산 산업과 관련된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비용·개발자금의 지원 2. 대학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연구시설·기기 등의 공동 사용 4. 창업교육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검토의견

- 전통문화와 국가유산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보존기술 개발, 문화콘텐츠 창출 등 산업적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창의적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관련 인재의 창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총장이 국가유산산업과 관련된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비용 및 개발자금 지원, 연구성과

제공, 연구시설 공동사용,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기반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 제20조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의4,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의3,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의4, 「무형유산법」 제44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 「공간정보산업법」 제16조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은 자금지원, 성과 제공,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현황]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4(창업지원) ①과학기술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9조의4(창업지원) ①대경과기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2조의3(창업지원) ①울산과기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의4(창업지원) ①광주과기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무형유산법」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산업법」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한편, 유사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지원에 관한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개정안 역시 시행령 등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수용 의견임.

4. 국제교류 촉진(안 제21조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 ~ 제21조</u> (생 략)	<u>제21조(국제교류의 촉진)</u>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u>제22조 ~ 제26조</u> (현행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전통문화와 국가유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야의 학술·교육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내외 전문인력 교류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총장이 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 제21조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8조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3조가 있으며, 이들 입법 사례는 국립 특수목적 교육기관의 국제화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로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

[유사 입법례 현황]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수용의견임.
- 끝으로, 개정안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일련의 조문을 신설하여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기존 조문이 ‘제17조부터 제21조’에서 ‘제22조부터 제26조’로 수정되었음.
- 현행 제21조제1항에서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조문 이동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제24조’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379